「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년 제108호 일부 개정법」

- **국가·지역:** 쿠웨이트
- **공 포 일:** 2010년 2월 10일

제1조

「2010년 제6호 민간부문의 노동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

사용자는 쿠웨이트 인력관리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며, 장관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, 문서 및 수수료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, 허가거절 시 해당결정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자본금 액수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으며,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결정은 무효로 본다.

사용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의로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근로자의 귀향여비를 보장해주어야 하며, 근로자가 사직 후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개시한 경우 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향여비를 부담한다.

제2조

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

고,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